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하고 이 시행규칙을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정부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건설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건설기술관리법을, 지난해 6월 11일 '품질관리 및 감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제도의 도입 및 개선' 키 위해 개정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은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한 것이다.

특히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기간(15일)내 지불한 지의 여부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시공분의 대금을 기간내 지불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되었다.

위 조항은 그동안 우리 협회가 관계요로에 의견을 제출, 신설토록 적극 건의함에 따라 개정된 것이며, 이에따라 회원사들의 하도급 대금 수령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개정	요지
제3장 건설기술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체계의 정립
제6조(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립하였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및 색인,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4. 이용자와의 정보전산망의 연결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연구개발 실시기관을 국·공립연구기관, 건설기술연구원, 특정 연구기관, 대학, 기술분야법인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로 정하였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과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토록 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과제의 선정,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 출연금과 지급·관리, 연구성과의 이용, 관리 등 업무를 수행토록 위탁하였다.
제7조(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개발목표 및 연구내용 2. 연구추진계획 3. 연구수행부서 및 관련기관 4.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5. 기타 정부의 연구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협약체결 대상기관등) 영 제29조의2제1항 제7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협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건설기술 연구개발 투자권고
1.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업법에 의한 각 협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3.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 건설공제조합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	건설부장관이 건설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건설업자 외에 정부투자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확대하고, 권고액의 범위를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제9조(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30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업면허 또는 특수건설업면허를 가진 자로서 당해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5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를 말하고,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용역업분야에서 최근 2년간 200억원이상의 용역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요지
<p>제10조(신기술의 지정신청등)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p> <p>② 제1항의 신기술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내용 및 범위 (신기술의 세부내용, 도면등을 포함할 것) 2. 개발비용 및 기간 산출근거 3. 활용현황 및 활용계획 4.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전망 5.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6. 신기술의 실용화가능 입증자료 7.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시험결과 등의 자료 8. 기타 신기술에 관련되는 자료 <p>③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검토기간 및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신기술의 보호 강화</p> <p>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을 종전 1~3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기술사용료를 종전 기술개발비의 5%이던 것을 신기술 적용공사의 해당공종 순공사비의 3%로 조정하였다.</p>
<p>제 11 조(건설기술의 검토기관) 영 제33조제4항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영 제29조의2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제 12 조(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p> <p>제 13 조(용역업자의 선정)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비가 3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건설기술용역사업(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4인 내지 6인 2. 5억원이상(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인 경우에는 3억 	

개정	요지
<p>원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인 경우에는 2인 또는 3인 ②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평가할 사항 및 평가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p> <p>제 14 조(설계등의 심의제외공사) 영 제39조제3항제5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도소·구치소등 교정시설의 건설공사 2. 기존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건설공사 3. 도로건설공사, 다만, 터널이나 길이 200미터이상인 교량 또는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이상인 교량을 축조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4. 상하수도시설공사, 다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2만톤 이상 또는 정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상하수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5. 20층미만으로서 2천세대미만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임해공단외의 단지조성공사 7. 구조물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공종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포장도로의 덧씌우기공사 나. 준설공사 다. 사방공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라. 단순굴토공사 또는 정지공사 <p>제 5 장 건설공사의 품질시험</p> <p>제 15 조(품질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가 품질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공사의 시방서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p>품질시험 대상공사의 범위 확대</p> <p>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시험 실시 대상기관을 발주자 및 건설업자외에 건설자재 생산업자 및 수입판매 업자까지 확대하고, 대상품목을 건설자재중 품질변화가 심한 반제품으로서 레미콘, 해사, 아스콘 및 수입철근 등으로 정하고 품질시험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으로 건축공사는 연면적 661㎡ 이상으로 전문공사는 총공사비 2억원 이상으로 정하였다.</p>

개정	요지
제 16 조(품질시험의 실시) ① 법 제24조제2항, 법 제24조의2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시험대장에 품질시험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 17 조(품질시험기준등) ①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시험 및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별표2의 기준외에 따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②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시 규모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 발주자는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표4의 검사시험 점검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8 조(품질시험성과관리등) ①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는 별제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의 의뢰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9 조(품질시험의 비용산출기준)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5와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 영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 당해기관의 시험비용의 기준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제 20 조(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 ① 영 제47조제1항각호의 건설공사를 허가등을 하였거나 발주한 행정기관(이하 “건설공사허가관서”라 한다)의 장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여부에	

개정	요지
<p>대한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은 품질시험의 적정성을 확인한 때에는 3월이내에 별표6의 품질시험적정성확인 점검요령에 따라 작성한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건설부장관에게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을 요청할 건설공사의 개요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후 1월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시험적정성확인의뢰서에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확인을 요청한 건설공사허가관서가 이를 부담한다.</p> <p>⑥ 제4항의 요청을 받아 건설부장관이 품질시험 적정성확인을 한 때에는 자체없이 그 결과를 별표6의 품질시험 적정성확인 점검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확인을 요청한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21 조(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영 제46조의2에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원 2.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장관이 건설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p>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보완</p> <p>재해발생의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발견, 대형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점검제도를 도입, 이를 발주자, 건설업자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과 안전점검 전문기관(건설기술연구원 및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전문안전점검으로 구분하며 전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일, 후자는 계약단위별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다.</p>
<p>제 22 조(시정조치결과보고)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은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건설공사 책임감리의 강화</p> <p>시공감리제를 폐지하여 책임감리제로 일원화하고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책임감리 대상기관과 책임감리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외국 감리기술의 활용법 등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였다.</p>
<p>제 6 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p> <p>제 29 조(단순공종 반복공사) 영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제14조제7호의 공사를 말한다.</p>	
<p>제 30 조(외국감리용역발주신청서) ①영 제50조의2제2항과 규정에 의한 외국감리용역발주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p>	

개정	요지
과 같다. ② 제1항의 외국감리용역발주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감리용역계산서안(국문) 3. 별지 제23호서식의 감리용역에 종사할 감리원의 명단 ③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세부사업계획 3. 외국감리용역업무계획 4. 외국감리용역도입의 목적 및 동기 5. 도입기술에 관한 주요내용·공법등 6. 도입기술의 국내보유현황 7. 감리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산출근거 8. 계약기간 및 그 산출근거 9. 당해 용역도입에 따른 기술습득·개량이나 연관기술 개발등 10. 당해 외국감리용역업자의 선정경위·사유 및 선정방법 11. 기타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감리대상기관의 범위 감리대상기관을 종전의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외에 자체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농협 등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기업자를 추가하였다. 외국감리전문회사의 활용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외국감리전문회사에 감리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신공법등 특수한 공법으로 시공하는 공사로서 국내 감리전문 회사가 감리하기 곤란한 경우 및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의 금액으로 낙찰된 공사를 정하고 의뢰절차 등을 정하였다.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건설기술자중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시험 대행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와 건설업 및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정지 이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기간은 기술사의 경우 1주이상, 기사급의 경우 2주 이상이다. 감리대상공사의 범위 계약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바닥면적이 1만 m ² 이상인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받도록 하고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외의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요 구조물 공사중 발주
제 31 조(학력·경력자의 교육훈련등) ① 영 제51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중 학력·경력자는 매 5년마다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감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력·경력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소지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학력·경력자에 대한 감리교육훈련의 기간은 2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졸업후 경력이 1년미만인 학력·경력자는 감리교육훈련기간을 3주이상으로 한다. ③ 학력·경력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④ 학력·경력자의 감리교육훈련의 대행, 교육훈련계획의 작성, 수료증교부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2 조(감리원의 배치방법) ①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개정	요지
<p>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영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③ 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부분책임감리를 받도록 하였다.</p> <p>다만 일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자체 소속직원이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 농지개량사업 및 농외 소득개발사업과 농어촌 정주권사업에 따른 공사, 지정문화재 기지정문화재의 수리, 복원, 정비공사 및 공사의 내용이 단순, 반복적인 건설공사(포장도로의 덧씌우기공사, 준설공사, 사방공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단순굴토공사 또는 정지공사 등)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제 33 조(감리원의 경력확인등) ① 감리전문회사는 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경력사항확인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감리전문회사의 업무범위</p> <p>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업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 특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토목감리 전문회사는 동별표의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특수공사(철강제설치공사중 건축물에 관한 것은 제외) 및 해당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건축감리전문회사는 동별표의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특수공사중 철강재를 설치하는 건축물공사 및 해당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각각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p>
<p>제 34 조(감리원의 업무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 2. 비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나. 기성 및 준공검사 다. 행정지원업무 <p>② 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분기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p>감리전문회사의 종류</p> <p>종래 감리전문회사를 시공감리전문회사와 전문책임자로 구분, 각각 토목부문과 건축부문으로 재분하던 것을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3대분 하였다.</p>

개정	요지
<p>4. 하도급 공사 추진현황</p> <p>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p> <p>6.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p> <p>7.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p> <p>8.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p> <p>9. 해당 기간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p> <p>10. 발주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p> <p>11.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③)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 발주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건설부장관은 감리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p> <p>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회사설립을 쉽게 하였고 대표자격을 종합 및 토목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기술사를, 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로 각각 제한하였다.</p>

제 35 조(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영 제54조제2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설관련업무에 20년이상 종사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감리전문회사,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 36 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2. 대표자에 대한 영 제54조제2항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술자 및 학력경력자현황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사항확인서, 다만, 학력경력자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경력증명서와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4. 당해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종류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감리	1. 토목분야 기술사 3인 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2인 이상을 포함한 특급감리원 10인 이상 2. 기사1급 20인 이상을 포함한 초급감리원 이상 40인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00 제곱미터 이상	
	1. 토목분야 기술사 3인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특급감리원 5인 이상 2. 기사1급 10인이상을 포함한 초급감리원 이상 25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장비 등
건축사	1.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인(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특급감리원 5인 이상 2. 기사1급 10인이상을 포함한 초급감리원 이상 25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	

개정	요지																											
<p>5.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p> <p>6.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p> <p>7.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8.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p> <p>② 제1항 각호의 서류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등록신청직전의 반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p> <p>③ 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을 받거나 변경 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1. 신청인의 사무실 확보 및 사용실태</p> <p>2. 감리원보유현황 및 감리원자격에 관한 사항</p> <p>3. 장비보유현황</p> <p>4.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현황</p> <p>5. 자본금현황 및 자산운용실태</p> <p>6.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p> <p>7. 기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감리원의 자격완화</p> <p>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자격을 종전에는 건설기술자, 건축사 등에 국한하던 것을 기술자격은 없으나 감리능력을 갖춘 학력, 경력에 따라 4개 종류로 등급화 하였으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p> <p>감리원의 등급별 자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 등급</th> <th>기술자격자</th> <th>학력경력자</th> </tr> </thead> <tbody> <tr> <td>특급감리원</td> <td>기술사, 건축사, 기사 1급 10년이상</td> <td>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td> </tr> <tr> <td>고급감리원</td> <td>기사1급 7년이상, 기사2급 10년이상</td> <td>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 대졸 12년 이상</td> </tr> <tr> <td>중급감리원</td> <td>기사1급 4년 이상, 기사2급 7년 이상</td> <td>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 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 이상</td> </tr> <tr> <td>초급감리원</td> <td>기사1급 이상, 기사2급 2년이상</td> <td>학사, 전문대졸 3년 이상 고졸 6년 이상</td> </tr> </tbody> </table> <p>감리원의 배치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책임감리원</th> <th>보조감리원</th> </tr> </thead> <tbody> <tr> <td>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td> <td>특급감리원</td> <td>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td> </tr> <tr> <td>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td> <td>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td> <td>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td> </tr> <tr> <td>총공사비 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td> <td>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td> <td>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td> </tr> </tbody> </table> <p>주 : 배치인원수는 감리대기기준에 정한 표준적인 수를 원칙으로 함.</p>	구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감리원	기술사, 건축사, 기사 1급 10년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고급감리원	기사1급 7년이상, 기사2급 10년이상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 대졸 12년 이상	중급감리원	기사1급 4년 이상, 기사2급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 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감리원	기사1급 이상, 기사2급 2년이상	학사, 전문대졸 3년 이상 고졸 6년 이상	구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총공사비 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구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감리원	기술사, 건축사, 기사 1급 10년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고급감리원	기사1급 7년이상, 기사2급 10년이상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 대졸 12년 이상																										
중급감리원	기사1급 4년 이상, 기사2급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 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감리원	기사1급 이상, 기사2급 2년이상	학사, 전문대졸 3년 이상 고졸 6년 이상																										
구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총공사비 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개정	요지
감리원을 충원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 39 조(등록증의 제교부신청 등) <p>① 감리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p> <p>② 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또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1회이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현황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제 40 조(등록증의 게시 등) <p>① 감리전문회사는 주된 사무실 안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대표자, 임·직원 및 감리원의 이력카드 3. 감리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 및 준비금에 대한 증명자료와 회계장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보유장비명세서 및 증명서류 7. 연간사업계획서 8. 감리계약 체결현황, 감리원 배치현황 기타 관계서류 	
제 41 조(부실감리원에 대한 조치) <p>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원의 인적사항 및 부실감리내용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사항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경력사항확인서에 제1항의 부실감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 처분기준</p> <p>감리전문회사가 부실감리를 하거나 법령에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바, 이 경우 처분기준을 정하였고 외국감리전문회사가 부실감리를 할 경우 계약해제 요구, 6월이내의 수주제한 또는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p>
제 42 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p>영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보급기관이나 단체등을 선정하여 소관건설공사기준을 유상 보급하게 할 수 있다.</p> <p>1. 동일한 건설공사기준에 대하여 여러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유상보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건설기술</p>	

개정	요지
<p>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단체로 선정한다.</p> <p>2. 제1호의 경우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단체를 선정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상보급기관·단체를 2이상의 기관·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p>	

제 7 장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등

제 43조(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독자의 세부적 업무내용은 별표9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 44조(준공표지판의 설치) ① 발주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대상이 되는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중건설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에는 공사명·공사기간·시공회사와 현장대리인·감리전문회사, 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 공사발주기관 및 설계자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별표 9]

건설공사감독자 업무 (제43조 관련)

1. 감독자는 다음서류 및 도표를 작성·비치할 것
 - 가.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시험대장
 - 나. 별지 제34호서식의 공사감독일지
 - 다. 별지 제35호서식의 명령부
 - 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시부
 - 마. 별지 제37호서식의 발생품정리부
 - 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급자재수불부
 - 사.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시험계획서
 - 아.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시험실적보고서
 - 자. 별지 제41호서식의 공정보고서 및 공정표
 - 차. 별지 제42호서식의 관급자재검사부
 - 카. 날씨, 온도, 조위 및 수위표등
 - 타. 품질시험관리도
 - 파. 매몰부분 및 구조물 검측대장

개정	요지
<p>하. 시공자의 안전관리 제반실적(교육계획등), 안전관리비사용실적 관계서류</p> <p>가. 공사측량 성과</p> <p>나. 공사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p> <p>2. 감독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감독할 것</p> <p>가. 공사표지판등의 설치</p> <p>(1)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 기타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부표의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할 것</p> <p>(2) 공사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등을 공사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할 것</p> <p>나. 시공확인</p> <p>(1) 시공자의 시공측량결과 설계도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게 할 것</p> <p>(2)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품질시험계획서 및 도급내역서등에 의하여 자재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p> <p>(3)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고,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할 것</p> <p>(4)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할 것</p> <p>(5)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할 것</p>	

개정	요지
<p>다. 자재관리</p> <p>(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할 것</p> <p>(2)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당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할 것</p> <p>라. 안전관리 및 환경정리</p> <p>(1) 시공자로부터 현장안전 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 계획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p> <p>(2) 공사로 인하여 대기·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또는 진동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것</p> <p>마. 설계변경</p> <p>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맞게 설계변경할 것. 다만, 구조물의 구조나 공업의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의 경우에는 구두로 이를 지시하고, 사후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보고할 수 있다.</p> <p>바.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p> <p>(1) 상급자로부터 시공에 관하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부에 이를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할 것</p> <p>(2) 시공에 관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시부에 기록하여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p> <p>사. 공사현장 정리</p> <p>준공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임시도로와 토취장 및 하상원상복구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할 것. 다만 현장 임시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의 완료후 철거하게 할 수 있다.</p> <p>감독자는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것</p> <p>가. 세부공정계획</p>	

개 정	요 지
<p>나. 시공자의 현장 기술자 확보사항</p> <p>다.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p> <p>4. 감독자는 사용자재 및 공사시공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시방서 기타 계약관계 서류에 특별히 정한 것외에는 법 제24조, 법 제24조의2, 영 제40조 내지 영 제45조, 영 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및 제23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품질시험 실시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시험결과를 기록·비치할 것.</p> <p>5. 감독자는 현장관리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험시설과 시험요원의 확보상황을 수시확인할 것</p> <p>6. 감독자는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상세한 경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p> <p>가. 천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한 때</p> <p>나.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않은 때</p> <p>다.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p> <p>라.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때</p> <p>7.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p> <p>가. 공사착수보고서</p> <p>나. 공사시공측량 결과서</p> <p>다. 공사기성부분 검사원</p> <p>라. 관급자재 입체 또는 대체사용신청서</p> <p>마. 준공기한연기신청서</p> <p>바. 준공검사원</p> <p>사. 현장설정 보고서</p> <p>아.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p> <p>자.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신청서</p> <p>차.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서 및 신청서</p> <p>8.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매월말일 현재의 추진 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p> <p>가. 공정</p> <p>나. 관급자재 수불상황</p>	

개정	요지
<p>다. 시험진도</p> <p>라.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p> <p>9.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p> <p>가.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에 대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p> <p>(1)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하도급하는 경우</p> <p>(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p> <p>(3)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기간내 지불한 지의 여부</p> <p>(4)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시공분의 대금을 기간내 지불한 지의 여부</p> <p>(5)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공사추진이 불가능한 경우</p> <p>10. 감독자는 잉여판급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등을 조사하여 발생품정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3호서식의 발생품잉여자재보고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게 할 것</p> <p>11. 감독자 교체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자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계인수를 작성·제출 할 것</p> <p>12.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등의 경력에 대하여 별제제2호 서식의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이중등록이 확인된 때 또는 공정관리능력과 업무수행능력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교체하도록 명할 것. 다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p> <p>13.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는 감독자는 그 상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원상복귀하고도록 하고, 기일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p>	<p>하도급 대금 수령 원활</p> <p>우리 협회가 관계 의견을 제출, 신설 토록 적극 견의함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기간(15일)내 지불한지의 여부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시공분의 대금을 기간내 지불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 회원사들의 하도급 대금 수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개 정	요 지						
<p>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것</p> <p>14. 감독자는 그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제1호의 서류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건설공사의 시공평가 등</p> <p>제 45 조(시공평가)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는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다.</p> <p>② 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준공된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중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시 실시하는 시공평가결과에 4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p> <p>③ 시공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하고, 시공중 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한다.</p> <p>④ 발주기관의 장은 영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시공평가총괄표와 공사별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46 조(하자발생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3호서식의 하자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건설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47 조(시공능력평가) ① 영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건설업자 별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서 평가한다.</p> <p>1.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감산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의 범위확대</p> <p>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국가, 지자체나 특정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하고 그를 지원하거나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시공 평가대상인 건설공사의 범위를 종전에는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 이었으나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p>						
<p>1.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감산할 것.</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하 자 발 생 률</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감점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이상 100 분의 10이하인 때</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0.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00분의 5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0.5</td> </tr> </tbody> </table>	하 자 발 생 률	감점 점수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이상 100 분의 10이하인 때	0.5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00분의 5마다	0.5
하 자 발 생 률	감점 점수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이상 100 분의 10이하인 때	0.5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00분의 5마다	0.5						

개정	요지
<p>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때 회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할 것.</p> <p>3.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 이상을 당해연도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할 것.</p> <p>4. 최근 3년간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에서 국산기자재 사용실적이 외산기자재 사용실적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하고,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감산할 것.</p> <p>5. 최근 3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평가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경우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하거나 감산할 것.</p> <p>②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5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p> <p>제 48 조(우수건설업자의 지정) ① 영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의 평가평점의 평균이 90점 이상이고 전체대상 건설업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들 것. 2. 최근 5년간 시행한 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최근 3년간 시행한 공사의 시공평가결과의 90퍼센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5. 최근 5년간 계속하여 당해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6. 당해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p>②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건설안전점검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p> <p>감리전문회사의 경우</p> <p>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중 토목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면책임 감리전문회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따라서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보면서 이령 시행후 2월 이내에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p> <p>감리시행준인 건설공사의 경우</p> <p>이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 또는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계약의 이령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계약으로 변경 체결할 수 있다.</p> <p>품질시험자의 경우</p> <p>이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이령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별도의 지정을 요하지 않으나 보유기술인력에 변동이 생길 경우 개정규정에 맞는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p>

설비